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난 예·경보 표준체계 구축·운영 근거 신설 등〉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160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정애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5. 8. 13.
3. 회부연월일 : 2025. 8.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상기후로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의 기상 재난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그 강도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기경보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재난경보체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보의 송출 방식, 사용 단말기, 정보 포맷 등이 제각각임.

미국의 통합공공경보·경고시스템(IPWS)나 일본의 전국상시경보시스템(J-ALERT)처럼 선진국들은 법률에 근거한 중앙통합형 경보 시스템을 통해 재난경보를 표준화하고 모든 전송 매체(휴대폰, 방송, 라디오 등)를 일괄 연계하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도 중앙정부가 지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이를 통해 국민 안전확보와 재난 대응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의2).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정보 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경보 표준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예보·경보시설 및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예보·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위 표준체계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신설>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 표준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설 및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 표준체계에 따라야 한다.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 ----- ----- ----- ----- ----- -----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 표준체

현행	개정안
②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 경보 · 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예보 · 경보 · 통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 3. (생략)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디지털광고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 · 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⑦ (생략)	계에 따라야 한다. ④ · 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⑥ 제5항에----- ----- ----- ----- -----제5항----- -----. 1. ~ 3. (현행과 같음) ⑦ 제5항 및 제6항에----- ----- ----- ----- ----- -----. ⑧ ----- ----- -----제5항 및 제6항에----- ----- ----- ----- -----.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⑧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시·군·구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시·도종합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⑨ · ⑩ (생략) ⑪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시·도종합계획과 시·군·구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항과 제8항을 준용한다. ⑫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의 절차, 시·도종합계획, 시·군·구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9항에----- ----- ----- ----- ----- ----- ----- ----- -----. ⑪ · ⑫ (현행 제9항 및 제10항과 같음) ⑬ ----- ----- ----- -----제9항과 제10항을----- -----. ⑭ 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 표준체계 운영, 제5항---제6항에----- ----- -----.

재난 예보 및 경보는 재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알림으로서 예보는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미리 알려 사전 대비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경보는 ‘재난이 발생했거나 임박했을 때 대피 등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음.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¹⁾,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난 예보·경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침 등을 포함한 시·도별, 시·군·구별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²⁾.

재난 예보·경보체계는 재난위험 지역에 설치된 각종 예보·경보 시설을 통해 국민에게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보 시설과 서버, 통신망 등을 총칭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내 재해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재난 예보·경보 시설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2025년 8월 기준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보·경보 시설은 24,576개소로 파악됨.

-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위험구역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시·군·구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시·도종합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⑨ 시·도종합계획과 시·군·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침
 2.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종합적인 재난 예보·경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⑩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시·도종합계획과 시·군·구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별 재난 예보·경보 시설 구축·운영 현황(2025. 8월 기준)]

(단위 : 대)

구 분	합 계	자동음성통보시설	자동우량경보시설	재해문자 전광판
전 체	24,576	21,121	2,066	1,389
서 울	539	340	26	173
부 산	768	548	17	203
대 구	380	332	17	31
인 천	145	136	-	9
광 주	293	289	-	4
대 전	332	261	-	71
울 산	373	302	23	48
세 종	273	262	-	11
경 기	2,284	1,858	237	189
강 원	670	234	342	94
충 북	1,066	739	242	85
충 남	1,980	1,868	42	70
전 북	4,025	3,789	182	54
전 남	1,855	1,616	135	104
경 북	3,866	3,411	376	79
경 남	5,386	4,856	379	151
제 주	341	280	48	13

(자료 : 행정안전부)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보·경보 체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구축·운영되고 있어, 정보의 송출 방식, 사용 단말기, 정보 포맷이 상이하고, 다양한 예보·경보 시설에 대해 통합적으로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하는 것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재난 정보의 전파 및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³⁾.

3) 현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은 실무자가 각 예보·경보 시스템마다 개별적으로 접속하여 각 재난 예보·경보 시설을 통해 예보·경보를 발령해야 함.

반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연방재난관리청(FEMA),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중앙통합형 예보·경보 시스템을 통해 재난정보를 표준화하고 모든 전송 매체(휴대폰, 방송, 라디오 등)를 일괄 연계하고 있음.

행정안전부도 전국 통합 재난 모니터링과 재난 정보 전파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을 재난·안전정보시스템 개편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재난 예·경보 통합 플랫폼 구축을 명시한 ‘제4차(2025~2029)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2024. 12.)하였으나, 재난 예보·경보 표준화를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재난 예보·경보 표준체계 구축·운영의 근거를 신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표준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예보·경보 시설 및 시스템 등 그 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표준체계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으로 재난 발생과 관련된 정보 확산의 신속성과 정보 전달의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행정안전부장관이 마련하여 운영하는 재난 예보·경보 표준체계 수립 대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예보·경보시설 및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②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예보·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표준 체계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표준체계 수립의 범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먼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예보·경보시설 및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안 제38조의2제2항)에 대해서는 예보·경보 체계의 범위에는 예보·경보 시설 및 시스템도 포함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범위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포함되므로, 해당 조문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예보·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안 제38조의2제3항 후단)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아닌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 예보·경보 체계까지 표준체계를 준수하도록 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별 법률에 근거한 주요 재난 예보·경보 체계]

법률	예보·경보 종류	발령 주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지진조기경보	기상청장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홍수(갈수)예보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
「산림보호법」	산불경보	산림청장
「자연재해대책법」	가뭄 방재 예보·경보	행정안전부장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도시침수예보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

일정한 유형의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입법 취지와 해당 재난 관련 예보·경보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표준체계 수립의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별 법률에 근거한 재난 예보·경보 체계를 제외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재난 예보·경보 체계⁴⁾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운영하고 있는 재난 예보·경보 시설에 한정하여 표준체계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둘째,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2027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기존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표준체계에 맞는 시설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률안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제1조를 고려하면, 표준체계에 적합한 시설로 전환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촉박한 측면이 있으므로, 전환 기한 설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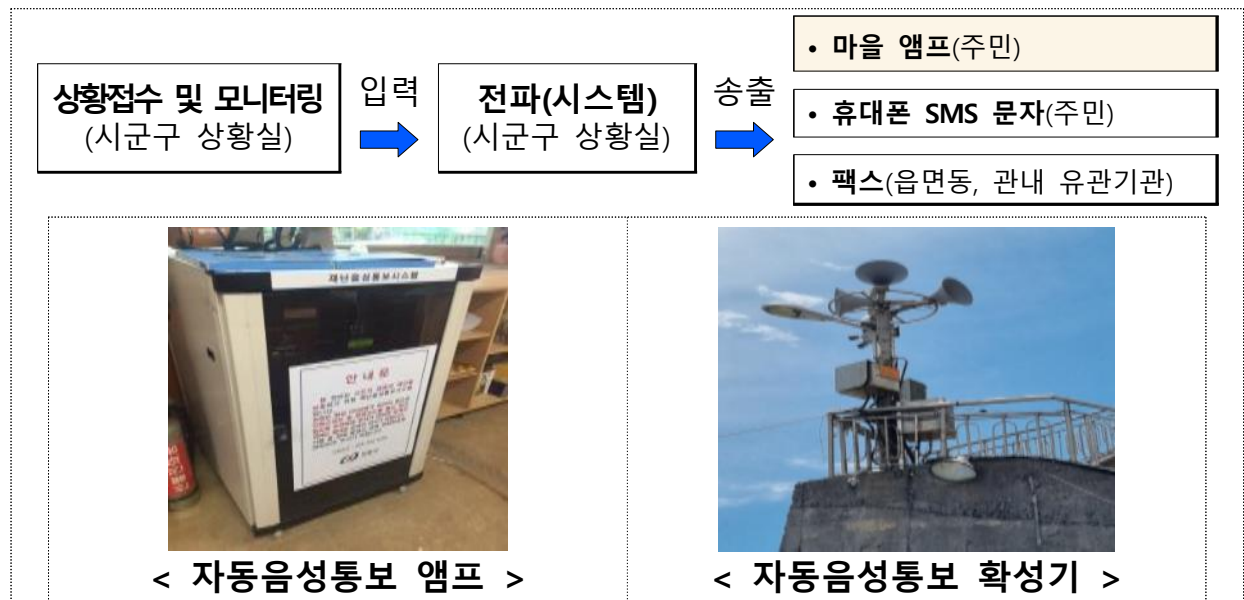
4) 재난문자방송(휴대폰, 차량 DMB), 재난방송(TV자막, 라디오 음성)

참고

지방자치단체 재난 예·경보 시설

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 마을앰프, 휴대폰 등을 통해 음성, 문자(SMS) 등으로 재난상황 통보



② 자동우량경보시스템

- 상류지역의 강우 상황을 관측하여 하류지역에 자동으로 경보 발령(사이렌) 및 대피 안내방송 실시



③ 재해문자전광판시스템

- 산간 계곡 야영지, 하천변 유원지 등 재난 우려가 높은 지역에 전광판을 이용하여 재난정보, 국민행동요령 전파

